

##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

번호	고려요소	배점항목	배점	특점	비고	
합 계			100(105)			
가	소득 인정액	단독 가구	0원	65		
			0원 초과~5만원 이하	55		
			5만원 초과~10만원 이하	45		
			10만원 초과~15만원 이하	35		
			15만원 초과~20만원 이하	25		
			20만원 초과~25만원 이하	20		
			25만원 초과~30만원 이하	15		
			30만원 초과~35만원 이하	10		
			35만원 초과~40만원 이하	5		
		40만원 초과~	0			
		부부 가구	0원	65		
			0원 초과~10만원 이하	55		
			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	45		
			20만원 초과~30만원 이하	35		
			30만원 초과~40만원 이하	25		
			40만원 초과~50만원 이하	20		
			50만원 초과~60만원 이하	15		
			60만원 초과~70만원 이하	10		
70만원 초과~80만원 이하	5					
80만원 초과~	0					
나	세대 구성	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	5	*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<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> ① (노부모)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 (손자녀)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 (장애인) 참여신청자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④ (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) 민법 제779조의 가족(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)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※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로 배점하며, 직계혈족의 배우자·배우자의 직계혈족·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		
		노인독신가구	3			
		노인부부가구(2명)	1			
		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등	0			
다	활동역량	보행 능력	양호	15	*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*지팡이 및 실버카드 등 보행 보조도구 사용	
			미흡	12		
			양호	9		
			미흡	6		
			양호	3		
			미흡	0		
	의사소통	의사소통	양호	15		*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,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
			미흡	12		
			양호	9		
			미흡	6		
			양호	3		
			미흡	0		
라	참여경력 (가점)	신규참여자	5	*2023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		
		해당없음	0			
마	60~64세 차상위 자격	차상위 계층 해당	60	*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.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익활동 참여 불가 *다만, 참여자 선발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		
		해당없음(공익활동 참여불가)	0			

※ 60~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,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  
 ※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,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, 참여제한 가능  
 ※ 동점자 발생 시,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(1순위, 활동역량 > 2순위, 세대구성 > 3순위, 소득인정액)